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심리서비스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서비스”란 심리학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2. “심리사”란 이 법에 따른 심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서비스제공기관”이란 심리사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4. “심리검사”란 개인의 지능, 인지기능, 정서, 행동, 성격, 태도, 적응수준, 그 밖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심리학적 측정 도구, 기기, 절차를 사용하여 관찰하고 측정하며 이를 기록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5. “심리평가”란 심리검사와 함께 면담과 행동관찰을 활용하여 개인의 지능, 인지 기능, 정서, 행동, 성격, 적응수준 및 그 밖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가설을 수립 하고 이를 분석하고 검증하여 보고서 서식으로 작성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6. “심리상담/심리치료”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을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심리재활”이란 심리적 장애의 고통과 불편감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증진 시키며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을 돕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7. “심리교육”이란 심리학적 지식과 원리에 관한 정확한 사실 및 개념을 교육하여 심리적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문제 혹은 장애의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한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8. “심리자문”이란 개인 또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자문에 응하여 심리학적 지식과 원리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험적 이고 과학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9. “심리실태조사”란, 개인과 가족의 심리실태를 파악하고, 심리적 건강 증진 및 심리문제 예방·해결 등을 위한 심리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10. “심리지원센터”란,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심리서비스의 시행 및 개발,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공심리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심리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심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심리지원센터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심리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4조(심리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심리실태를 파악하고, 심리적 건강 증진 및 심리문제 예방·해결 등을 위한 심리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심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리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심리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심리적 문제의 예방·상담,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심리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심리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심리서비스의 시행은 심리사가 담당한다.

③ 국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리사의 사명) ① 심리사(心理師)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의 증진을 사명으로 한다.

② 심리사는 개인과 사회에 발생한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심리사의 면허

제7조(심리사 면허) ① 심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야 한다.

1.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실무수련 기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실무수련기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하고 외국의 심리사 면허를 가진 사람
- ② 심리사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
부장관이 시행한다.

제8조(전문심리사) ① 심리사로서 전문심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심리사 자격취득 후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분야를 표시하지
못한다.
- ③ 전문분야 과목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심리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전문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심리사 명칭의 사용) 이 법에 따른 심리사가 아니면 심리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심리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4. 심리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심리사 면허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심리학 전공 및 관련 과목에 관한 기준 및 심리사 국가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심리사 전문분야 수련과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 ②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심리학 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심리학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 ③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심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심리사의 업무) 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2.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3. 심리교육
4. 심리자문
5. 심리사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
6.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7.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

제3장 심리사의 등록과 개업

제13조(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7조에 따라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12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비치하는 심리사등록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제24조에 따른 한국심리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관리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심리사로서 그 자격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한국심리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심리서비스 법인의 설립 등)

- ① 심리사는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심리사가 심리서비스 법인을 개설 또는 해산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심리사가 심리서비스업을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리사의 책무) 심리사는 공공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심리사가 아닌 자와의 제휴금지 등) ① 심리사는 제7조에 따른 심리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거나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심리사가 아닌 자는 심리사를 표방하며 심리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심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엄수의 의무) 심리사, 심리사이었던 사람 또는 사무직원,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안조치 의무) 심리사는 심리서비스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심리검사 및 관련 사항이 대중이나 공공에 노출되어 오용 및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나 교육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보수교육) ① 의료기관, 공공기관, 센터, 기업, 학교 등에서 제12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에 종사하는 심리사는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 대상,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심리사 수련생) ① 심리사는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심리사 수련생을 둘 수 있다.

- ② 심리사는 심리사 수련생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③ 심리사 수련생의 선발, 수련기간, 수련내용, 수련평가 등 심리사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사 수련생의 실무수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직원) ① 심리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심리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3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 3.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심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 4.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자격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한국심리사협회

제24조(한국심리사협회) ① 심리사의 전문성과 품위를 유지하고 심리사 직무의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하며, 개인과 조직,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심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야만 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심리사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심리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협회의 임원)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회장은 협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6조(협회의 기관) ① 협회에 총회를 두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③ 협회에 회칙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④ 이사회는 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27조(징계)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리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심리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회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심리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분야를 표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심리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심리사가 아닌 자로서 영리목적으로 심리사를 표방하며 심리서비스를 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 본문을 위반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갖춘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른 심리 분야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그 밖에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심리 분야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실무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단, 본 항의 경과조치는 공포 후 5년간 유지하며, 동 기간 내 제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모두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자격의 인정 기준, 실무수련의 인정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